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01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김위상 · 신성범 · 김은혜  
박충권 · 박성훈 · 김기웅  
조지연 · 김성원 · 김승수  
김재섭 · 김선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령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민간자격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등록자격과 등록자격 중 주무부장관이 공인하는 공인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을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자격은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이 중복으로 행정청에 등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격 간 중복, 자격 취득자의 혼선과 함께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민간자격 등록 이후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민간자격 중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거나 허위·과장된 정보가

공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의 제재나 관리는 부실한 실정임.

이에 주무부장관에게 동일한 명칭으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을 3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 등록취소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자격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3 등).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그 밖에”로, “운영에”를 “운영 및 등록·재등록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자격관리자는 다른 민간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민간자격관리자는 3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재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방법으로”를 “방법 및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재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를 관리·운영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민간자격 명칭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은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명칭으로 주무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 중 등록일자가 가장 빠른 민간자격을 제외한 모든 민간자격관리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민간자격의 명칭을 변경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자격을의 재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해당 민간자격을 계속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고시한 기한 내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1. ~ 1의3. (생략)

<신설>

2. ~ 5. (생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재등록하지 아니

하고 이를 관리·운영한 자

2. ~ 5. (현행과 같음)